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품·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3.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
6.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33조제2항 후단 중 “46명”을 “47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0”을 “652”로 하고, 일반직 계 “649”를 “6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30”을 “632”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제1항 관련)

1.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	3명

2.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가. 식품안전관리 업무(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
나. 의료제품분야 심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8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u>처장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u> ③ (생 략) <u><신 설></u>	제5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u>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 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u>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u>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 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u> ② <u>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 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 한다.</u> 1. <u>식품·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의약품 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u> 2. <u>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 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u> 3. <u>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 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u> 4. <u>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 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 준화에 관한 사항</u>

	<u>5.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 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 · 관리</u>
	<u>6.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 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u>
	<u>7. 그 밖에 식품·의약품등 수 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u>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 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 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u>46명</u> 을,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 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② ----- ----- -----. ----- ----- ----- ----- <u>47명</u> ----- ----- ----- ----- ----- ----- ----- -----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생략)

제36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

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
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
년 9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
관을 둔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
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
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
한다.

1. 식품·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의약품
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2.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3.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

6.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식품·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④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0</u>	<u>652</u>	+2
·	·	·	
·	·	·	
일반직 계	<u>649</u>	<u>651</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30</u>	<u>632</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3